

부산장애인육상연맹 회장후보자 자격요건

□ 관련근거 (부산광역시장애인육상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)

제11조(회장후보자 자격요건) ① 회장후보자 중 연맹의 규약 제12조 및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시·도지부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② 장애인체육회, 중앙연맹(시·도지부, 시·군·구지부 포함), 시·도장애인체육회(시·군·구장애인체육회, 읍·면·동장애인체육회 포함)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다만,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
부산광역시장애인육상연맹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

□ 관련근거 (부산광역시장애인육상연맹 규약)

제12조(임원의 결격 사유)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부산시장애인육상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.

-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산시장애인육상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2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
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- 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 5. 국회의원
 6.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